

06

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



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

*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」 요약

- ① 구조물의 천장·바닥 및 벽은 누수되거나 빗물·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 사용
- ②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. 다만,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③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(생물학적 처리 방법, 물리·화학적 처리 방법의 경우에만 해당)
- ④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(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) 건조·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(퇴비화 방법의 경우에만 해당)
- ⑤ 퇴비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 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함.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빗물·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함
- ⑥ 액비화 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함
- ⑦ 가축분뇨의 처리 방법상 가축분뇨의 저장·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로 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 시설이나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함

일반

품종·개량

번식

영양·사양

환경

질병

관련제도 및 전망

경영